

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995년 8월 10일

총무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7월 27일 삼척시장 제출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7월 28일

다. 심사일자 : 제7회 삼척시의회 (입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('95.8.10) 심사 · 의결

II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홍성용)

가. 제안이유

-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입법 취지와 목적, 타조례와의 형평성등에 어긋나게 구성되어 있어,
-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,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문화시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나. 개정조례안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명문화시키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12명(면의경우 10명) 이내로 명문화함 (안 제3조)
- 당연직위원을 읍면장, 부읍면장, 읍면노인회장, 바르게살기운동, 읍면위원장, 읍면 새마을부녀회장,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, 농어민(후계자) 대표, 리장 1인, 예비군중대장, 파출소장으로 함.

다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

III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길석)

- 종전까지는 당연직위원의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, 이를 명문화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향토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사료됨.

N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규모가 작은 읍면의 경우 일부 당연직 위원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역 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,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조문 구성상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.

V. 토론요지 : 없 음

V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당연직 위원을 획일적으로 명시할 시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골자

- 당연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읍면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)

다. 수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

VII. 심사결과

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